

[불공정 하도급거래②] 모양도 각양각색,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총정리

하도급법에서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이 총 16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.

1. 부당한 특약의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(이하 "부당한 특약")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아래와 같은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합니다.

- 1)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
- 2)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
- 3)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
- 4) ▲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·허가,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, ▲원사업자(발주자를 포함)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, ▲원사업자의 지시(요구,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,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)에 따른 재작업,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, ▲관련 법령,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
- 5) 천재지변, 매장문화재의 발견, 해킹·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
- 6)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(하도급대금 중 재료비,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)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. 다만,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
- 7)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

2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에게 사업을 위탁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(이하 "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")하거나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게 됩니다.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2)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3)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4)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
- 5)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6)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7)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8)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,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
3.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·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·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

4. 선금금의 지급

수급사업자(병)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(을)가 발주자(갑)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, 수급사업자가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
5. 내국신용장의 개설

원사업자(을)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(병)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난 경우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6.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(병)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에 (i)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, (ii) 목적물 등의 납품 시 수량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다만,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(ii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7. 공정한 검사의 기준, 방법 및 시기 등 결정

수급사업자(병)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(을)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·타당하게 정해야 합니다.

8. 부당반품의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았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(이하 "부당반품")해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보게 됩니다.

- 1)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
- 2)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3)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4)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

9. 감액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. 다만,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.

10. 부당결재 청구의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(i)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, (ii) 자기가 구입·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11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(병)에게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금전, 물품, 용역,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12.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. 다만,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3.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

원사업자(을)가 수급사업자(병)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때 지급기일은 60 일 이내의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.

14. 관세 등 환급액 지급

원사업자(을)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(병)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15. 설계변경,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

원사업자(을)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▲설계변경,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, ▲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

16. 부당한 대물변제, 부당한 경영간섭, 보복조치, 탈법행위 등의 금지

원사업자(을)는 수급사업자(병)의 의사에 반해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해서는 안 되며,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,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이병일 변호사

Partner

byungil.lee@seumlaw.com

T. 02.562.3117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 2015 SEUM Law.